

※ 회원자격 별첨 규정 ※

2024.07.16. 일부개정

1. 해당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 시·도를 포함한다.
2. 최근이라 함은 인준하는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3.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, ~~만 2년~~ 1작품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4.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만 4년 이상 연극활동을 증빙 할 수 있는 1작품 이상의 자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. [2024.07.16. 신설]
- ~~4.5. 4작품 중 최소 해당지부 2편, 해당지회 1편 이상의 공연작품이 있어야 하며, 지부가 없는 지회는 해당지회 3편 이상으로 한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~~
- ~~5.6. 해당지역 단체가 타 지역에서 공연한 작품은 해당지역으로 본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~~
- ~~6.7.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작품 실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, 단순진행, 단순크루 오퍼레이터, 크루, 단순보조업무(기획보, 홍보보, 등)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. 포함하지 않는다. 신생분야의 경우는 본 협회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여부를 심의한다.[2024.07.16. 신설 및 일부개정]~~
- ~~7.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년까지만 인정한다.[2024.07.16. 삭제]~~
8. 공연작품이라 함은 연극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으로
 - (1) 쇼, 퍼포먼스, 낭독극, 쇼케이스,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 - (2) 거리(야외)공연, 아동(가족)극, 단막극의 경우 ~~3편~~ 2편을 1편으로 인정한다. (단, 거리(야외)공연, 아동극이라 하더라도 60분 이상의 일반적 범위 안의 공연은 1편으로 인정한다. 단막극의 경우, 20분이상 50분 이내의 극을 말한다.) [2024.07.16. 신설 및 일부개정]
 - (3) 신체극과 무용극, 국악극 등의 경우 협회 소속 연극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은 포함한다.
 - ~~(4) 온라인 공연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대체된 경우는 인정하나, SNS 등의 게재만을 목적으로 한 공연은 인정하지 않는다. [2024.07.16. 삭제]~~
 - (4) 시민연극, 학생극 공연은 인정하지 않는다. [2024.07.16. 신설]
9. 시민연극이라 함은 협회 소속 정단체 극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 다수가 일반시민일 경우이거나, 시민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일반시민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.

[2024.07.16. 신설]

~~9.~~ 10. 학생극이라 함은 협회 소속 정단체 극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 ~~절반 이상이 다수가~~ 학생일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.

그러나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만 20세 ~~19세~~ 이상의 학생신분으로 기성 극단에서 활동한 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간주하되,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연한 작품은 공연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
~~10.~~ 11. 공연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(~~작품명 변경 포함~~)일지라도 다른 연출 또는 다른 역할일 경우 다른 작품으로 인정하며, 동일 연출 혹은 동일 역할일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다면 다른 작품으로 인정한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
~~11.~~ 12. 극작분야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춘문예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 당선했거나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자는 회원자격을 갖는다. 단,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
- (1) 단막극은 ~~3작품~~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.
- (2) 공동극작의 경우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.
- (3) 각색은 두 편을 창작 한 편으로 하되, 순수창작 한 편은 필수로 한다.
- (4) 동일작(~~작품명 변경 포함~~)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.

~~12.~~ 13. 연출 분야는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. 단,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

- (1) 공동연출 및 단막극은 ~~3작품~~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.
- (2) 협력연출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(3) 동일작(~~작품명 변경 포함~~)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.

~~13.~~ 14. 모든 공연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회(~~소위원회~~)의 ~~의견을 통해 결정하여 의사회~~ ~~안건으로 선정된다.~~ 심의를 거쳐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. [2024.07.16. 일부개정]